

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7. 8.(금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38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2건, <보고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- 가. ㈜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·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(2016-39-141)

-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제13조제2항에 따른 '16.6.1.~ 6.2.일간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·방해한 (주)LG유플러스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-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·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LGU+ 법인에 대해 750만원 과태료, LGU+의 법무담당 전무 이○○, 공정경쟁담당 상무보 김○○, 기업모바일정책팀장 정○○에 대해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

나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39-142)

- 방송법 개정('16.1.27 공포, 16.7.28 시행)에 따라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시 합의 절차 및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-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에 노출되는 상품, 노출 시간·횟수 및 노출 방법 등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고,
-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률로 이동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(고시)」 중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규정하는 등의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6. 폐 회 (11:05)